

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제6조제5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다. 위반행위의 동기, 위반 정도,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2조 제4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	법 제12조 제4항제2호	경고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다. 제6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12조 제4항제3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